

담배꽂초등무단투기 과태료 고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5월과세분 담배꽂초등무단투기 과태료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년 06월 3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제 목 : 담배꽂초등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고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8조 및 제68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3. 공고기간 : 2011. 06. 30 ~ 2011. 07. 14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세부내역 붙임
5. 고지서재교부 및 문의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청소행정과(☎02-2199-7296)
6. 공고기간 내 과태료고지서를 발급받아 기한내(2011. 07. 28) 납부하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1개월까지는 5%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후 매1개월마다 1.2%의 증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7%까지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지정의 취소등)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에 앞서 동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지하였으나, 이사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하오니, 아래 기한 내 청문에 응하시기 바라며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음의 예정된 행정처분(지정취소)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2011. 07. 0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1. 공고기간 : 2011. 07. 01 ~ 2011. 07. 15
2. 공고방법 : 구청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3.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
4. 처분사유
 -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 위반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수입 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
5. 청문실시 및 의견서 제출
 - 청문실시 : 2011. 07. 15 (금) 16:00 - 17:00 강북구청 지역경제과(6층)
 - 의견제출기한: 2011. 07. 01 ~ 2011. 07. 15
 - 제출장소 :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2-59 강북구청 지역경제과(본관6층)

☎ 02-901-6445 / fax. 02-901-6450

6. 처분대상

성명	영업소 위치	상호
이영자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27-9	식품

7. 기타사항

위와같이 공시송달 내용에 의거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에 응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의거 청문종결하고자 합니다.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